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한병도 · 전용기 · 양부남
홍기원 · 윤종균 · 이광희
김승원 · 한민수 · 진선미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비용 및 기탁금을 보전·반환받은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반환받은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의 반환대상액 약 81억 원 중 반환액은 약 27억 원에 불과하여 반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하여 지방선거의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 귀속임에도 징수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세무서장에게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적이 있음.

이에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을 미반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2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5조의2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부기한까지 당해”를 “납부기한까지 해당”으로,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비용 등 미반환금 징수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65조의2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5조의2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정당·후보자가 반환하여야 할 선거비용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생 략)</p> <p>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u>당해</u>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u>당해</u>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u>납부기한까지</u> <u>당해</u>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u>당해</u>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해당</u>-----</p> <p>-----</p> <p>-----<u>해당</u>-----</p> <p>-----</p> <p>-----</p> <p>-----</p> <p>-----.</p> <p>③ -----</p> <p>-----<u>납부기한까지</u> <u>해당</u>-----</p> <p>-----</p> <p>-----<u>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u>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p>

	<p><u>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u></p> <p>④ · ⑤ (생략)</p>
--	---